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제 주 4 · 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회 설치, 수형인의 일괄 직권재심 청구 권고, 실종선고 청구의 특례, 공동체 회복 지원 등을 새롭게 도입함. 이에 시행령 전부개정을 통해 법률 위임 사항 구체화 및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추가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의 국회 보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제1호)

나. 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다. 추가 진상조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첨부 서류 정비(안 제9조)

마.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을 위한 신청절차 마련(안 제10조)

바. 실종선고 청구를 위한 신청절차 마련(안 제11조)

사. 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 사항 보완(안 제12조)

1)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외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 및

실종선고 청구 신청 접수에 관한 사실조사 의무 부여

2) 위원회의 직권재심 청구 권고(법 제15조제1항)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사실조사 근거 마련

아.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자. 제주4·3관련 재단의 추가 진상조사 사업 추진 과정에 위원회 심의·의결
의무 명시(안 제17조제3항)

차.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조문 번호와 서식 전부 정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와
별지 서식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의결사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3호에서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국회 보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회)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설치하는 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국회 추천 위원 4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

의 위원장은 관련 전문가를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추가 진상조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안전의 사전심의
2. 추가 진상조사 결과에 관한 안전의 사전심의
3.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발간에 관한 안전의 사전심의
4. 그 밖에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사전심의
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진상조사 결과 보고)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분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지체없이 국회 소
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는 행정안전부와 법 제25조에 따른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비공개로 결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주4·3
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와 그 각 호에서 정
하는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주4
·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희생자(후유장애인)·유족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희생자(후유장애인용)·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 희생자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다만,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나.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또는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하여 들은 사람 중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서

다. 국립종합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1부

2.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유족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용)·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 제1호가목의 서류

나. 제1호나목의 서류

다.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2명이 해당 유족이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서(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

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을 유족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희생자(수형자)·유족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희생자(수형자용)·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 제1호가목의 서류

나. 제1호나목의 서류

다. 제2호다목의 서류

4. 희생자의 유족 신고만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희생자의 유족 신고서 및 제1호가목의 서류, 제2호다목의 서류

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희생자신고 또는 희생자의 유족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희생자의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희생자 또는 유족의 신고서를 접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희생자신고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그 사실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이 이를 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

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장소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10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에 대한 신청) ① 법 제12조에 따라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을 하려는 희생자 또는 유족은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위원회 결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받으려는 희생자 또는 유족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희생자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다만,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희생자 및 유족 결정통지서 각 1부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신청 접수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그 사실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장이 이를 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장소 및 신

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11조(실종신고 청구에 대한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방불명 희생자의 실종신고 청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 사건본인의 제적등본, 다만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 그 사유서
3. 희생자 결정통지서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종신고 청구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신청 접수 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실종신고 청구 신청 접수 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그 사실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이 이를 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12조(사실조사) ① 제9조부터 제11조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하기 전에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직권재심 청구 권고의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해 대상자 확인 등의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2항에 따른 사실조사의 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심의·결정 등) ① 제9조제4항에 따라 심의·결정을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심의·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에 대하여 그 심의·결정사항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명부작성 등) ① 실무위원회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을 받은 자, 실종신고 청구 대상으로 결정된 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부터 제11조에 따른 신고인(신청인) 또는 희생자의 친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명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유골의 발굴 등) 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제8호에 따른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이하 ‘치유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 등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치유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치유사업의 운영을 대행하게 한 경우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치유사업의 운영 및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

한다.

제17조(제주4·3 관련 재단에의 출연)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대해 법 제25조에 따른 정부의 출연이 필요한 때에는 정부에 기금의 출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기금을 출연하는 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
2. 제주4·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3. 제주4·3사건의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4. 제주4·3사건 관련 문화·학술사업
5. 그 밖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③ 재단은 법 제25조에 따른 추가 진상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조사 계획의 수립 및 보고서 작성·발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8조(기탁금품의 접수방식 등) ① 재단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즉시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탁되거나 기

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기탁자가 기탁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기탁금품이 있는 경우

④ 재단은 반기(半期)별 기탁금품의 접수현황을 반기 말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기탁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탁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재단은 전년도 기탁금품의 접수 및 사용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의료지원금)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향후치료비·간병비 및 보조장구 구입비 등의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향후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치료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향후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서

유사사례의 향후치료비를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간병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관련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월 56만 2천원

3. 보조장구 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기대여명기간(期待餘命期間)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다만, 기대여명기간이 보조장구의 1회 내구연수보다 짧을 경우에는 그 내구연수를 기대여명기간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향후치료비와 보조장구 구입비의 지급액 산정 시 법정이율에 따른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하고, 보조장구 구입 시 적용하는 기대여명기간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생활지원금)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부양가족이 없는 자로서 근로능력 등을 상실하여 생활이 어렵거나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자로 하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을 3등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지원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법 제1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9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22조(재심의) ① 법 제17조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희생자(후유장애인용) · 유족 신고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희생자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피해상황	발생 일시	당시 연령	당시 직업
		주요 내용		

의료지원금 지급 검토사항

후유장애 내용	별지 제1호서식 3쪽 중 제2쪽에 작성
향후 치료비	[] 필요 [] 불필요
간호비	[] 필요 [] 불필요
보조장구 구입비	[] 필요 [] 불필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희생자(후유장애) 및 유족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희생자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다만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과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하여 들은 사람 중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서 3. 국립종합병원, 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신고인(위임자 포함)의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희생자의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1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 2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 3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 4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m²]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용) · 유족 신고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의				
희생자	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신고사유	[] 사망		년	월	일 사망
		[] 행방불명		년	월	일경 행방불명
	당시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 2명 이상일 경우 별지 제2호 서식(3쪽 중 제2쪽)을 사용		사망(행방불명) 경위		※ 6하원칙에 따라 기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희생자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다만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과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하여 들은 사람 중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서 3.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2명이 해당 유족이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서(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을 유족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신고인(위임자 포함)의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희생자의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1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 2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 3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 4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희생자						
성명(한자)		()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신고	[]사망	년 월 일	사망			
사유	[]행방불명	년 월 일	일경	행방불명		
당시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사망(행방불명) 경위		※ 6하원칙에 따라 기재				

희생자						
성명(한자)		()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신고	[]사망	년 월 일	사망			
사유	[]행방불명	년 월 일	일경	행방불명		
당시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사망(행방불명) 경위		※ 6하원칙에 따라 기재				

희생자의 유족 명단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희생자와의 관계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희생자(수형자용)·유족 신고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희생자	성명 [한글/한자]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피해 상황	발생 일시	당시 연령	당시 직업
		주요 내용		

수형사항 ※ 구체적인 경위는 별지 제2호의2서식 3쪽 중 제2쪽에 작성

형 신고일	복역 장소	형량	수형 내용	출소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희생자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다만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과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하여 들은 사람 중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서 3.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2명이 해당 유족이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서(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을 유족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신고인(위임자 포함)의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희생자의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1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 2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 3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 4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m²])

[illegible]

희생자의 유족신고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희생자	성명 [한글/한자]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희생 유형	희생자 결정일	
	당시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유족	성명 [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희생자와의 관계 의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주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희생자의 유족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희생자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다만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2명이 해당 유족이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서(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을 유족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신고인(위임자 포함)의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희생자의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1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 2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 3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 4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희생자의 유족 명단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희생자와의 관계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희생자신고 접수대장

(접수기관:)

[illegible]

재심의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희생자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피해 상황	발생 일시	당시 연령
주요 내용			
신청사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재심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

제주4·3사건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대상자 (희생자)	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희생자 명부번호		희생자 결정일		
	당시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부모	성명	부:	모:	
		등록기준지	부:	모:	
신청내용	신청구분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등재(정정)할 사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부의 작성(정정) 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희생자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다만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희생자 및 유족 결정 통지서 각 1부	수수료 없음
------	---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목 적 : 제주 4·3사건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보유기간 : 영구
▶ 개인정보 항목을 미제공할 수 있으며, 미제공시에는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업무 추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 접수대장

(접수기관:)

[illegible]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사건 본인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최후주소			
	등록기준지			
	실종당시 상황	발생 일시	당시 연령	당시 직업
		주요 내용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 사건본인의 제적등본, 다만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 그 사유서 3. 희생자 결정통지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의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목 적 : 제주 4·3사건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보유기간 : 영구
▶ 개인정보 항목을 미제공할 수 있으며, 미제공시에는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업무 추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 접수대장

(접수기관:)

[illegible]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현행과 같음 >
제2조(심의·의결사항)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0호에서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 기획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7. 4. 25.> 3. 기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심의·의결사항)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3호에서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국회 보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	< 삭 제 >

현 행	개 정
<u>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기획재정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법제처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유족대표·관련전문가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u>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u>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제6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u>	<u>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u>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u>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제5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u>

현 행	개 정
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② 삭제 <2011. 3. 29.> ③ 삭제 <2011. 3. 29.>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u>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 < 신 설 >	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u>제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 <u>제7조(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회)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설치하는 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국회 추천 위원 4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전문가를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u>

현행	개정
< 신 설 >	② <u>분과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u> 1. <u>추가 진상조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안전의 사전심의</u> 2. <u>추가 진상조사 결과에 관한 안전의 사전심의</u> 3. <u>추가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발간에 관한 안전의 사전심의</u> 4. <u>그 밖에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u> ③ <u>분과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u> 제8조(진상조사 결과 보고) ① <u>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② <u>제1항의 보고서는 행정안전부와 법 제25조에 따른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비공개로 결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u>

현 행	개 정
제8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①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 주4·3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 족으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전 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 다)와 그 각 호에서 정하는 첨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제주4·3 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희생자(후유장애인)·유족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 식의 희생자(후유장애인용)·유 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첨부 서류 가.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 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 기 곤란한 경우에는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민법」	<u>지 아니한다.</u> 제9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 주4·3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 족으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전 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 다)와 그 각 호에서 정하는 첨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주4·3 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희생자(후유장애인)·유족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 식의 희생자(후유장애인용)·유 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첨부 서류 <u>가. 희생자의 제적등본과 가 족관계증명서, 다만,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 우에는 그 사유서</u> <u>나.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 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 기 곤란한 경우에는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민법」</u>

현 행	개 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또는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하여 들은 사람 중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서 나. 국립종합병원·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1부 2.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 · 유족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용)·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 제1호가목의 서류 나.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2명이 해당 유족이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각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또는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하여 들은 사람 중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서 다. 국립종합병원·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1부 2.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 · 유족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용)·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 제1호가목의 서류 <u>나. 제1호나목의 서류</u> 다.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2명이 해당 유족이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각

현 행	개 정
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서(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을 유족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희생자(수형자)·유족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희생자(수형자용)·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 제1호가목의 서류 나. 제2호나목의 서류 4. 희생자의 유족 신고만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3서식의 희생자의 유족신고서와 제2호나목의 서류 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희생자신고 또는 희생자의 유족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희생자의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u>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u>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u>첨부</u>하도록 한다.	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서(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을 유족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희생자(수형자)·유족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희생자(수형자용)·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 제1호가목의 서류 나. 제1호나목의 서류 다. 제2호다목의 서류 4. 희생자의 유족 신고만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희생자의 유족신고서 및 제1호가목의 서류, 제2호다목의 서류 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희생자신고 또는 희생자의 유족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희생자의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u>주민등록등본을 확인</u>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u>첨부</u>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	개정
록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희생자 또는 유족의 신고서를 접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희생자신고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그 사실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이 이를 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장소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 신설 >	< 현행과 같음 > ④ 제1항에 따른 희생자 또는 유족의 신고서를 접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희생자신고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그 사실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이 이를 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현행과 같음 > 제10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에 대한 신청) ①법 제12조에 따라 희생자의 가족관계

현 행	개 정
	<u>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을 하려는 희생자 또는 유족은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위원회 결정을 받아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받으려는 희생자 또는 유족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u>1. 희생자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다만,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u> <u>2. 희생자 및 유족 결정통지서 각 1부</u> <u>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u> <u>④ 제3항에 따라 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신청 접수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그 사실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결정</u>

현 행	개 정
< 신 설 >	<u>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이 이를 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u> <u>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u> <u>제11조(실종신고 청구에 대한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방불명 희생자의 실종신고 청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u> <u>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u> <u>2. 사건본인의 제적등본, 다만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 그 사유서</u> <u>3. 희생자 결정통지서</u> <u>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종신고 청구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u>

현 행	개 정
제9조(사실조사)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	<u>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u> ③ <u>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u> ④ <u>제3항에 따라 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신청 접수 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실종신고 청구 신청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그 사실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이 이를 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u> ⑤ <u>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u> 제12조(사실조사) ① <u>제9조부터 제11조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u>

현 행	개 정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하기 전에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의 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u>제10조(심의·결정 등) ① 제8조제</u>	을 받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하기 전에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u>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직권재심 청구 권고의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해 대상자 확인 등의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u>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2항에 따른 사실조사의 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u>제13조(심의·결정 등) ① 제9조제</u>

현 행	개 정
<u>4항에</u> 따라 심의·결정을 요청 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심의·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통보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에 대하여 그 심의·결정사항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u>제11조(명부작성 등) ①</u> 실무위원회는 <u>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 ② 실무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u>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 또는 희생자의 친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u> <u>제11조의2(유골의 발굴 등) 위원</u>	<u>4항에</u> 따라 심의·결정을 요청 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심의·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u>제1항에 따른</u> 통보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에 대하여 그 심의·결정사항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u>제14조(명부작성 등) ①</u> 실무위원회는 <u>제13조에 따라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을 받은 자 및 실종신고 청구 대상으로 결정된 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 ② 실무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u>제9조부터 제11조에 따른 신고인(신청인) 또는 희생자의 친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명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u> <u>제15조(유골의 발굴 등) 위원회는</u>

현행	개정
회는 <u>법 제3조제2항제8호</u>에 따른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u>제12조(기획단의 설치·운영)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수집 및 분석과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위원회에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u> <u>② 기획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기획단소속 단원중에서 임명하고, 단원은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및 법제처장이 지정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제주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지사 및 유족대표·관련전문가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u>	<u>법 제5조제2항제8호</u>에 따른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삭제 >

현행	개정
<u>축한다.</u> <u>③ 기획단에 진상규명을 위하여</u> <u>약간인의 전문위원을 두되, 임</u> <u>기제공무원으로 한다.</u> <u>④ 기타 기획단의 운영에 관하</u> <u>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u> <u>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 < 신설 >	<u>제16조(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u> <u>업)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u> <u>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3</u> <u>조제1항에 따른 제주4·3트라우</u> <u>마 치유사업(이하 ‘치유사업’이</u> <u>라 한다)의 운영을 다음 각 호</u> <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u> <u>또는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u> <u>있다.</u> <u>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u> <u>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u> <u>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u> <u>신건강증진시설</u> <u>2.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의</u> <u>복지증진 등의 사업 수행을 목</u> <u>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u> <u>3. 그 밖에 치유사업에 필요한</u> <u>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u> <u>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제주</u>

현 행	개 정
<u>제12조의2(제주4·3 관련 재단법인</u> 에의 출연)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는 제주4·3사료관 및 평화 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 조사 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 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u>재단법인</u> (이하 “<u>재단법인</u>”이라 한다)에 대해 법 <u>제8조의2</u>에 따른 정부 의 출연이 필요한 때에는 정부 에 기금의 출연을 신청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기금을 출연하는 <u>재단법인의</u> 사업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 의 운영·관리	<u>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u> <u>라 치유사업의 운영을 대행하</u> <u>게 한 경우 대행에 필요한 비</u> <u>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u> <u>수 있다.</u> ③ 그 밖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치유사업의 운영 및 대행 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 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행정 안전부장관이 정한다. <u>제17조(제주4·3 관련 재단에의 출</u> 연)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등 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 으로 설립되는 <u>재단</u>(이하 “<u>재</u> <u>단</u>”이라 한다)에 대해 법 <u>제25</u> <u>조</u>에 따른 정부의 출연이 필요 한 때에는 정부에 기금의 출연 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기금을 출연하는 <u>재단의</u>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 의 운영·관리

현 행	개 정
2. 제주4·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3. 제주4·3사건의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4. 제주4·3사건 관련 문화·학술사업 5. 그 밖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u>재단법인의</u>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u>제12조의3</u>(기탁금품의 접수방식 등) ① <u>재단법인</u>은 법 <u>제8조의3 제1항</u>에 따라 기탁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즉시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탁되거나 기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주4·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3. 제주4·3사건의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4. 제주4·3사건 관련 문화·학술사업 5. 그 밖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u>재단</u>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③ <u>재단은 법 제25조에 따른 추가 진상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조사 계획의 수립 및 보고서 작성·발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u> <u>제18조</u>(기탁금품의 접수방식 등) ① <u>재단</u>은 법 <u>제28조제1항</u>에 따라 기탁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즉시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탁되거나 기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② <u>재단법인</u>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u>재단법인</u>은 기탁자가 기탁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기탁금품이 있는 경우 ④ <u>재단법인</u>은 반기(半期)별 기탁금품의 접수현황을 반기 말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u>재단법인</u>은 기탁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탁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u>재단법인</u>은 전년도 기탁금품의 접수 및 사용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u>재단법인</u>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u>재단</u>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u>재단</u>은 기탁자가 기탁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기탁금품이 있는 경우 ④ <u>재단</u>은 반기(半期)별 기탁금품의 접수현황을 반기 말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u>재단</u>은 기탁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탁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u>재단</u>은 전년도 기탁금품의 접수 및 사용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u>재단</u>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u>제13조(의료지원금) ①</u> 법 <u>제9조</u> <u>제1항</u>에 따른 향후치료비·간병비 및 보조장구 구입비 등의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향후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치료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향후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서 유사사례의 향후치료비를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간병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관련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월 56만 2천원 3. 보조장구 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장	<u>제19조(의료지원금) ①</u> 법 <u>제19조</u> <u>제1항</u>에 따른 향후치료비·간병비 및 보조장구 구입비 등의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향후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치료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향후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서 유사사례의 향후치료비를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간병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관련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월 56만 2천원 3. 보조장구 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장

현 행	개 정
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기대여명기간(期待餘命期間)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횃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다만, 기대여명기간이 보조장구의 1회 내구연수보다 짧을 경우에는 그 내구연수를 기대여명기간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향후치료비와 보조장구 구입비의 지급액 산정 시 법정이율에 따른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하고, 보조장구 구입 시 적용하는 기대여명기간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u>제14조(생활지원금) ①</u> 법 <u>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u>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부양가족이 없는 자로서 근로능력 등을 상실하여 생활이 어렵거나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자로 하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기대여명기간(期待餘命期間)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횃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다만, 기대여명기간이 보조장구의 1회 내구연수보다 짧을 경우에는 그 내구연수를 기대여명기간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향후치료비와 보조장구 구입비의 지급액 산정 시 법정이율에 따른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하고, 보조장구 구입 시 적용하는 기대여명기간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u>제20조(생활지원금) ①</u>법 <u>제19조 제1항에 따른</u>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부양가족이 없는 자로서 근로능력 등을 상실하여 생활이 어렵거나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자로 하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현 행	개 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을 3등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지원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u>제15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u>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u>제8조의 규정에 의한</u>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한 날부터 발생한다. <u>제15조의2(재심의)</u> ① 법 제12조에 따른 재심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을 3등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지원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u>제21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u> 법 제1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u>제9조에 따른</u>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한 날부터 발생한다. <u>제22조(재심의)</u> ① 법 제17조에 따른 재심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

현 행	개 정
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u>제16조</u>(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u>제23조</u>(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3258